

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1월 10일

발의자: 김광성 의원

찬성자: 김성기, 이은미, 이창열 의원

1. 제안이유

조례안은 과다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고 기초 수급자, 장애인세대 등 요금감면 사유로 추가하여 신설하는 등 수도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량 과다, 미납 등의 원인으로 인한 과다요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(안 제28조제4항관련)
- 나. 수도사용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정수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징수 폐지(안 제33조제5호관련)
- 다.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위기 발령한 때와, 수급자, 장애인, 모범업소, 국가유공자를 요금감면 사유로 신설추가(안 제35조관련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위생법」,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2. 12. 15. ~ 2023. 1. 4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2. 12. 2.~ 2022. 12. 13. 아래표 참조.

조례안	제출 의견(상하수도사업소)	의회 의견
<p>제35조제1항6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6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“제1급 감염병”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</p> <p>7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p> <p>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</p> <p>9.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·모범업소</p> <p>10. 「농지법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</p> <p>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</p> <p>④ 과다한 수도의 사용, 누수, 미납 등에 따라 요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분할 납부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</p>	<p>○ <u>10호 삭제</u></p> <p>사유: 수도법 제3조 상 “수도”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로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로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수돗물 공급이 어려움.</p> <p>○ <u>국가유공자 추가</u></p> <p>사유 :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국가보훈시책으로 우리군도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을 적극 반영</p>	<p>【수용】</p> <p>집행부의견을 수용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하며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은 삭제 또한, 해제수수료를 폐지함</p>

	<p>○ 해제수수료 징수 폐지</p> <p>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</p> <p>한 ‘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’ 고충민원 분야</p> <p>중 제도개선 권고과제로</p> <p>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</p> <p>불편해소 방안마련을 위</p> <p>해 해제수수료 징수를</p> <p>폐지하고자 함</p>	
--	---	--

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과다한 수도의 사용, 누수, 미납 등에 따라 요금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분할 납부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제33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5조제1항제6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“제1급감염병”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

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
9.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· 모범업소

10. 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

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8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과다한 수도의 사용, 누수, 미납 등에 따라 요금 잔액을 일 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분할 납부 요청에 따라 일정기 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제33조(수수료) 군수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. 1. ~ 4.(생 략) 5. 제38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 제 수수료 5,000원	제33조(수수료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“제 1급감염병”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

	<u>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7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<u><신 설></u>	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<u><신 설></u>	9.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·모범업소
<u><신 설></u>	10. 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
6. (생 약)	11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② (생 약)	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정수처분) ① (생 약)	제38조(정수처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.	<삭 제>
③ (생 약)	③ (현행과 같음)

[관련법령]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, 제3급감염병, 제4급감염병, 기생충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
2. “제1급감염병”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. 다만,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·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.

- 가. 에볼라바이러스병
- 나. 마버그열
- 다. 라싸열
- 라. 크리미안콩고출혈열
- 마. 남아메리카출혈열
- 바. 리프트밸리열
- 사. 두창
- 아. 폐스트
- 자. 탄저
- 차. 보툴리눔독소증
- 카. 약토병
- 타. 신종감염병증후군
- 파.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
- 하.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
- 거.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
- 너. 신종인플루엔자
- 더. 디프테리아

식품위생법

제47조(위생등급)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·가공업소(공유주방에서 제조·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,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, 2016. 2. 3., 2020. 12. 29.>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장을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응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>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자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2. 3.>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>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8조(위기경보의 발령 등)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,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의5 제1항 제1호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피해의 전개 속도,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재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

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6. 1. 7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35조제1항제6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“제1급감염병”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
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9.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·모범업소
10. 「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김광성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6